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7,004,118	9,510,124
일반회계	288,577,527	8,657,326
특별회계	28,426,591	852,798
기타특별회계	28,426,591	852,79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54,912	43,647
수질개선특별회계	12,942,113	388,26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2,776	17,183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3,160,000	94,800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88,942	11,66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161,278	64,838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716,400	81,4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31,800	12,95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598,370	137,951

제 2 조 2013년도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12,139,413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 6 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